

제 호

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

1. 업체명:
2. 대표자:
3. 주 소:
4. 인증품목(웹사이트 주소 또는 소프트웨어 명칭):
5. 유효기간:
6. 인증의 범위:

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
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인증기관의 장

직인